

10. 농지법시행령중개정령

대통령령 제16,254호 1999. 4. 19.

개정이유

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협의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하고, 물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지조성비의 감면대상시설에 농수산물물류센터 등을 추가하는 등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지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,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농림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밖의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면적을 새로운 농업진흥지역으로 대체지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함(령 제33조제2항 신설).
- 나. 농업진흥구역안에서 농업인주택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농업인세대의 세대주로 명확히 하고,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세대주가 최근 5년간 농업인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부지면적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주택제도를 현실에 맞게 보완함(령 제34조제4항)

- 다. 농업보전구역안에서는 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숙박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1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보전구역안의 농업환경의 보호를 강화함(령 제35조제3호).
- 라.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시 공장설립을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장설립절차를 간소화함(령 제39조제2항제5호 신설).
- 마. 중소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창업부담을 완화함(령 제55조제4호 신설).
- 바. 농지조성비 감면대상시설에 농수산물물류센터, 유통단지, 화물터미널 및 창고 시설 등을 추가하여 물류시설의 설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, 사실상 농지로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여 산림으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하여 국민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킴(령 별표 2 제15호의3, 제36호 및 제37호).

※ 본문은 생략함

주택회보